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519

2024. 9. 12.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4. 8. 23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. 8. 2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9. 1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시민의 재산권 보장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일부 분묘의 봉안시설, 자연장지 전환·설치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「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5조(봉안시설의 설치장소) 거리제한 규정 적용 예외사항 정비
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타목나)③에 해당하는 경우
- 토지나 지형상황으로 시경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-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(문중)봉안시설로 변경할 경우

○ 법 제명 인용 현행화 및 띄어쓰기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○ 본 안건은「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5조 제2항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한 예외 규정에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별표 1의 제3호타목나)③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 밖에 법 제명 인용 현행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 개정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인 '가족·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·설치' 하는 경우에는 봉안시설 설치 장소의 거리 제한 규정 등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됨으로써 「개발제한구역법」과 동 조례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시민에게 편의성을 제고하며 봉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 됨

4. 질의·답변요지 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